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승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36

발의연월일: 2020. 9. 18.

발 의 자:조승래・김승원・김원이

서영석 · 오영환 · 윤영찬

이상헌 · 이성만 · 이용빈

장철민 · 한준호 · 홍정민

황운하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의 특구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시행자가 참여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고, 연구개발특구의 관리권자가 불명확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개발 주체 사이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었음.

또한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 내 교육·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 주하려는 경우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주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기업이 입주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입주승인을 다른 산업단지와 유사하게 입주계약으로 변경하고, 기업이 입주 시 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의 편 의 확대 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(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, 제37조 등).

법률 제 호
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0호 중 "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입주승인을 받은 자"를

"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"로 한다.

제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 (종전의 제5항) 중 "제4항"을 "제6항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해당 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·도지사에게 특구개발계획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시·도지사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특구개발계획안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.
- 8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과 제4항에 따른 제안의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, 같은

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각호 외의 부분 및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"을 각각 "제2항"으로한다.

① 특구의 관리권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, 관리기관은 제43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된다.

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34조제2항제3호"를 "제34조제3항 제3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제34조제1항"을 "제34조제2항"으로 한다.

제37조의 제목 "(입주승인)"을 "(입주계약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"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"를 "관리 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"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"입주 승인"을 "입주계약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입주승인을 받은 자 는"을 "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"으로 한다.

제38조제1항 중 "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"를 "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"를 "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39조 중 "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"를 "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40조의 제목 "(입주승인의 취소 등)"을 "(입주계약의 해지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" 을 "관리기관은"으로, "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"를 "입주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"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"입주승인을 받은"을 "입주계약을 체결한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"입주승인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지"를 "입주계약 사항을 변경하는 계약(이하 "입주변경계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하지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입주승인이 취소된"을 "입주계약이 해지된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41조제1항 전단 중 "입주승인을 받아야"를 "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"로, "입주승인을 받지"를 "입주계약을 체결하지"로, "입주승인이 취소된"을 "입주계약이 해지된"으로 한다.

제42조제1호 중 "입주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입주승인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지 아니한 자"를 "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"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입주 승인이 취소된"을 "입주계약이 해지된"으로 한다.

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"를 "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제2항 각 호의 지역을"을 "제2항에 따라 특구를"로 한다.

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4조(벌칙) ① 제37조(제38조제2항 및 제39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지

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계약사항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
- 2. 제56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

법률 제17349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74조(벌칙) ① 제37조(제38조제2항 및 제39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계약사항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
 - 2. 제56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

사람

제75조를 삭제한다.

법률 제17349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75조를 삭제한다.

제76조제1항제1호 중 "승인을 받지"를 "신고를 하지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입주기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입주승인을 받은 자는 제37조에 따른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10. "입주기관"이란 제37조에	10
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	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
의 입주승인을 받은 자 및	체결한 자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	
립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	
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	
체결한 자를 말한다.	
제6조의2(특구개발계획) ①・②	제6조의2(특구개발계획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
	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
	해당 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으
	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
	계획의 수립을 과학기술정보통
	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④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
	<u>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·도지</u>
	사에게 특구개발계획안을 제안
	할 수 있으며 시·도지사는 그
	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학

③ • ④ (생 략)

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특구개발 계획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,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34조(특구관리계획의 수립 등) 조 <u><신 설></u>

①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른 특구관리계획 (이하 "특구관리계획"이라 한 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

12000210211
개발계획안에 따른 특구개발계
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.
<u>⑤</u> ・ <u>⑥</u> (현행 제3항 및 제4항
과 같음)
<u>⑦</u>
제6항
⑧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
청과 제4항에 따른 제안의 절
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
통령령으로 정한다.
세34조(특구관리계획의 수립 등)
① 특구의 관리권자는 과학기
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, 관리
기관은 제43조 및 제46조의 규
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
<u>단이 된다.</u>
② (현행 제1항과 같음)
③ 제2항

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특구

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~ 5. (생략)
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되어 고시된 특구관리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, 이를 받은 시·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의사본과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35조(토지의 용도 구분 등) ①
 <u>제34조제2항제3호</u>에 따른 토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 - 1. ~ 5. (생략)
 - ② (생 략)
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어 고시된 특구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 가운데 「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·군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도시·군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

1. ~ 5. (현행과 같음) ④
<i>◎</i> 제2항
<u> </u>
제35조(토지의 용도 구분 등) ①
제34조제3항제3호
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③
제34조제2항

있다.	
제37조 <u>(입주승인)</u> ① 교육·연구	제37조(입주계약) ①
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	
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	
는 바에 따라 <u>과학기술정보통</u>	관리기관과 입주계약
신부장관의 입주승인을 받아야	을 체결하여야 한다. 입주계약-
<u>한다</u> . <u>입주승인</u> 사항 가운데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	
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	
② 제1항에 따라 <u>입주승인을</u>	② <u>입주계약을</u>
<u>받은 자는</u> 「산업집적활성화	<u>체결한 자는</u>
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	
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	
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	
제38조(부지의 양도제한 등) ①	제38조(부지의 양도제한 등) ① -
입주기관이 교육·연구 및 사업	
화 시설구역의 부지·시설 또는	
건축물(이하 "건축물등"이라 한	
다)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	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	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인을 받아야 한다.	
② 교육·연구 및 사업화 시설	2
구역의 건축물등을 양수·임차·	
사용대차 또는 전차(轉借)하거	
나 건축물등에 대하여 전세권	

을 설정받으려는 자는 미리 제 37조에 따른 <u>입주승인을 받아</u> 야 한다.

③・④ (생 략)

제39조(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등) 경매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관으로부터 교육·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7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40조(입주승인의 취소 등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,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승인을 취소할수 있다.

- 1. <u>입주승인을 받은</u>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 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
- 2. · 3. (생략)
- 4. 입주기관이 제37조를 위반하

<u>입</u> 주계약을 체결
하여야 한다.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39조(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
의 취득 등)
<u>이</u>
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제40조(입주계약의 해지 등) ①
관리기관은
입주
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1. <u>입주계약을 체결한</u>
2. • 3. (현행과 같음)
4

여 입주승인 사항의 변경을---입주계약 사항을 변경하는승인받지 아니한 경우계약(이하 "입주변경계약"이라

5. (생략)

- ② 제1항에 따라 <u>입주승인이</u> 취소된 입주기관은 그 남은 업 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 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.
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제41조(건축물등의 양도명령) ①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
7조(제38조제2항 및 제39조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입주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 이 취소된 입주기관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관이 소유하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

계약(이하 "입주변경계약"이라
<u>한다)을 체결하지</u>
_
5. (현행과 같음)
②입주계약이
해지된
<u> 911. 1 12.</u>
③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
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
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
을 들어야 한다.
제41조(건축물등의 양도명령) ①
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
입주계약을 체결하지
ol <u>出</u>
주계약이 해지된

축물등을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. 입주기관이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(생 략)

- 제42조(건축 허가 등의 제한) 관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·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 - 1. 제37조에 따른 <u>입주승인을</u>
 <u>받지 아니한 자 또는 입주승</u>
 <u>인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지</u>
 아니한 자
- 2. 제40조제1항에 따라 <u>입주승</u> 인이 취소된 입주기관 제43조(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) 저 ① (생 략)
 - ②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2 항 및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 구는 진흥재단이 관리한다. 다

·
① (청체코 가 ㅇ)
② (현행과 같음)
제42조(건축 허가 등의 제한)
<u>.</u>
1입주계약을
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입
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
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
2입주계
약이 해지된
제43조(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)
① (현행과 같음)
②

만, 진흥재단은 특구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한 관리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.

- 1. 2. (생략)
- ③ ④ (생 략)
- ⑤ 제2항 각 호의 지역을 관리 ⑤ 제2항에 따라 특구를-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진흥재단과 특 구의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.
- 제7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| 제74조(벌칙) ① 제37조(제38조제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 - 조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 반하여 입주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 입주한 자 또는 승인받 지 아니하고 입주승인사항을 변경한 자
 - 2. 제56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, 진흥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

				<u></u>	구음
각	호의	기관	또는	대통령령	성으
로	정하	는 관	현 전투	문기관에	위
탁형	할 수	있다.			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③ ④ (현행과 같음)

2항 및 제39조에 따라 입주계 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입주계 1. 제37조(제38조제2항 및 제39 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 한 자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체 결하지 아니하고 입주계약사항 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장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.

>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.

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서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

법률 제17349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제74조(벌칙) ① 제37조(제38조제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

1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실증 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

의 벌금에 처한다.

- 2. 제37조(제38조제2항 및 제39 조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 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입주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승 인받지 아니하고 입주승인사 항을 변경한 자
- 3. 제56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 나 도용한 사람

- 1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실증 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
 - 2. 제56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 나 도용한 사람

법률 제17349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

2항 및 제39조에 따라 입주계 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입주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 한 자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체 결하지 아니하고 입주계약사항 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.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다.
- 1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실증 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

제75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 | <삭 제> 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74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 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 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법률 제17349호 연구개발특구의 | 법률 제17349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75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 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74조제2호의 위반행위를

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

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

2. 제56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 나 도용한 사람

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<삭 제>

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 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 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76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한다.

-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<u>승</u>
 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등
 알도한 자
- 2. (생략)
- ②・③ (생 략)

세76조(과태료) ①
,
1 <u>신</u>
<u>고를 하지</u>
2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현행과 같음)